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35
----------	-------

발의연월일 : 2026. 10. 16.

발 의 자 : 황운하·박은정·신장식
정춘생·차규근·백선희
김재원·강경숙·주철현
서왕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잔류하면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기능의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청회 개최 의무를 폐지하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를 “관계”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부(部)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다. <u>1. 외교부</u> <u>2. 통일부</u> <u>3. 법무부</u> <u>4. 국방부</u> <u>5. 삭제</u> <u>6. 성평등가족부</u>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u>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u> ⑤ · ⑥ (생략)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관계</u> ----- ----- ----- ----- ----. <u>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할 때 위원회의 의견도 제시하여야 한다.</u> ⑤ · ⑥ (현행과 같음)